

2021년 정 기 총 회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2021년
정기총회

2021. 2. 26.(금)
(서면보고)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총 회 안 건

1. 2020년 기관현황
2. 2020년 사업보고
3. 2020년 사업 예·결산보고
4. 2021년 사업계획
5. 2021년 사업 예산보고
6. 2020년 수탁시설 감사보고서

목 차

1. 2020년 주요회의(요약)	5
2. 2020년 기관현황	6
3. 총회안건 심의	
-2020년 사업보고	9
-2020년 사업 예·결산보고	11
-2021년 사업계획	19
-2021년 사업 예산보고	21
4. 2020년 감사보고서	24

[부록]

■ 정관	29
------	----

2020년 주요회의(요약)

구분	정 기 총 회	
	일 시	심 의 안 건
	2020년 01월 30일	•2019년 사업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구분	임 시 총 회	
	일 시	심 의 안 건
	2020년 03월 16일	•정관변경의 건
2	2020년 06월 25일	•법인상호 변경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구분	이 사 회 회 의	
	일 시	심 의 안 건
1	2020년 01월 06일	•감사 선임의 건
2	2020년 02월 27일	•이사 사임의 건
3	2020년 02월 28일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수탁신청의 건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법인전입금 지출의 건
4	2020년 03월 02일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건
5	2020년 04월 02일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신청의 건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 지출의 건
6	2020년 05월 04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정원변경의 건
7	2020년 05월 06일	•법인 운영규정 제정의 건 •이사 사임의 건
8	2020년 05월 14일	•2차 추경예산서 승인의 건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9	2020년 06월 10일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2020년 사업계획서(수정) 및 3차 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 •법인 명칭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건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보고의 건
10	2020년 09월 16일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 2020년 4차 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
11	2020년 09월 22일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신청의 건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출의 건
12	2020년 09월 28일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법인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정부시 고산종합사회복지관 1차 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
13	2020년 10월 13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민락 LH브라운빌리지) 명칭 및 고유번호 대표자성명 변경 승인의 건
14	2020년 11월 25일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2020년 5차 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
15	2020년 12월 21일	•민락 다함께돌봄센터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운영규정 수정 승인의 건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운영규정 수정 승인의 건 •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추가경정 및 가결산, 2021년 사업계획서 및 2021년 본예산 승인의 건

2020년 기관현황

■ 기관 개요

기	관	명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설	립	일	2004년 01월 01일						
기	관	장	〈공동대표〉 성 명: 김점동 성 명: 현명진						
시	설	현	황	용도: 근린생활시설 면적: 291.35(㎡) 전용면적: 128.36(㎡)	인	력	현	황	총인원: 6명(남 4명/여 2명) 기관장 : 2명 사무국장 : 1명 소장 : 1명 실장 : 2명 과장 : 1명
				부동산소유자명: 오성민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22번길 11, 2층							
전	화	031-853-8448		팩	스	031-853-8408			
홈	페이지	http://www.nanumcenter.org/		대표	E - m a i l	nanumbokji@nate.com			

■ 재정현황

○ 세입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법인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의무전입금	실제전입금		
2020년	231,381	103,429	-	15,882	112,370	-	-	-	-	149

○ 세출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사무비			재산조정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상환금	기타	집행잔액 (이월금)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2020년	232,010	82,358	58,310	46,555	-	44,247	-	-	538	-

■ 종사자현황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용일	퇴직일	자격증	비고
센터장	현명진	770331-1*****	2017.11.14	-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지영찬	841224-1*****	2018.11.01	-	평생교육사	
소장	김태웅	720227-1*****	2019.07.01	-	사회복지사	
실장	민히연	730110-2*****	2018.03.23	-	사회복지사	
실장	박유리	840115-2*****	2018.11.01	-	사회복지사	
과장	하진범	891217-1*****	2017.09.01	-	평생교육사	

■ 차량 보유 현황

[보유차량]

연번	차종/연식/차량번호	용도	구입년도	구입금액
1	스파크 1.0 / 2019 / 36모 5732	업무용	2018	12,970,000

■ 각종보험 가입현황

소재지	면적	보험사명	보험종류	보험료	가입기간	비고
의정부	-	KB손해보험	화재배상 책임보험	20,000	202.09.25~ 2020.09.25	
의정부	-	KB손해보험	학원배상 책임보험	40,100	202.09.25~ 2020.09.25	
의정부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547,640	2021.01.21.~ 2021.01.21	

■ 통장관리현황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용도
1	신협	137-006-281789	사단법인나눔고용복지재단	나눔평생교육원
2	신협	137-006-281854	사단법인나눔고용복지재단	평생학습보조금
3	신협	137-006-281912	사단법인나눔고용복지재단	본법인경상비
4	신협	137-006-334061	사단법인나눔고용복지재단	평생교육지방보조금
5	신협	137-007-790349	사단법인나눔고용복지재단	법인후원금
6	신협	137-007-790387	사단법인나눔고용복지재단	CMS후원

■ 지도점검 및 감사 현황(2020년)

일시·장소	주무관청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2020.12.11. 나눔원격평생교육원	의정부교육지원청	특이사항없음	-

2020년 사업보고

■ 2020년도 사업결과(요약)

【직영사업】

1. 사업명: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 사업기간: 2020년 02월 ~ 12월
- 사업목적: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습득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을 이민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실시하여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이민자
- 참여자수/수료인원: 119명 / 116명

2. 사업명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사업기간: 2020년 03월 ~ 12월
- 사업목적: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습득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이민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실시하여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이민자
- 참여자수/수료인원: 30명 / 25명

【부설사업】

1. 사업명 : 경기도 지정 평생학습관

- 사업기간: 2020년 03월 ~ 12월
- 사업목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의정부 시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평생교육 사업 개발 및 실행, 지역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여 교육 취약 계층을 포함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경기북부 결혼이주여성 및 의정부 취약계층
- 참여자수/수료인원: 60명 / 60명

2. 사업명 : 인성함양 프로그램

- 사업기간: 2020년 03월 ~ 12월
- 사업목적: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차별이나 편견 없는 다문화사회 실현
- 지원대상: 경기북부 결혼이주여성
- 참여자수/수료인원: 15명 / 15명

3. 사업명 : 평생교육바우처

- 사업기간: 2020년 01월 ~ 12월
- 사업목적: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참여자수/수료인원: 237명 / 136명

2020년 사업 예·결산

■ 2020년 사업 예·결산 총괄표

(단위: 원)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사업수입	사업수입	103,429,903	103,429,903	사무비	인건비	82,358,739	82,358,739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15,882,000	15,882,000		업무추진비	58,310,234	58,310,234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112,370,081	112,370,081		운영비	46,555,813	46,555,813
차입금	차입금	0	0	재산조성비	시설비	0	0
전입금	전입금	0	0	사업비	사업비	44,247,045	44,247,045
이월금	이월금	0	0	전출금	전출금	0	0
잡수입	잡수입	149,313	149,313	잡지출	잡지출	538,740	538,740
세입합계		231,831,297	231,831,297	세출합계		232,010,571	232,010,571

■ 2020년 세입결산서

세입결산서

1. 2020년도 세입결산서

(단위 : 원)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계
관	항	목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예산	0	103,429,903	0	103,429,903
			결산	0	103,429,903	0	103,429,903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0	103,429,903	0	103,429,903
			결산	0	103,429,903	0	103,429,903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0	103,429,903	0	103,429,903
			결산	0	103,429,903	0	103,429,903
			증감	0	0	0	0
		국고보조금	예산	11,350,000	0	0	11,350,000
			결산	11,350,000	0	0	11,350,000
			증감	0	0	0	0
			예산	4,532,000	0	0	4,532,000

2020년 세입결산서

1

세입결산서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계
관	항	목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군구보조금	결산	4,532,000	0	0	4,532,000
			증감	4,532,000	0	0	4,532,000
		공동모금회보조금	예산	0	0	0	0
			결산	0	0	0	0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15,882,000	0	0	15,882,000
			결산	15,882,000	0	0	15,882,000
			증감	0	0	0	0
후원금수입	합계	비지정후원금	예산	0	0	112,370,081	112,370,081
			결산	0	0	112,370,081	112,370,081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0	0	112,370,081	112,370,081
			결산	0	0	112,370,081	112,370,081
			증감	0	0	0	0
			예산	0	0	112,370,081	112,370,081
			증감	0	0	0	0

2020년 세입결산서

세입결산서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계
관	항	목					
	합계		결산	0	0	112,370,081	112,370,081
			증감	0	0	0	0
잡수입	잡수입	기타수입	예산	0	149,313	0	149,313
			결산	0	149,313	0	149,313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0	149,313	0	149,313
			결산	0	149,313	0	149,313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0	149,313	0	149,313	
		결산	0	149,313	0	149,313	
		증감	0	0	0	0	
	총계		예산	15,882,000	103,579,216	112,370,081	231,831,297
결산			15,882,000	103,579,216	112,370,081	231,831,297	
증감			0	0	0	0	

2020년 세입결산서

■ 2020년 세출결산서

세출결산서

1. 2020년도 세출결산서

(단위 : 원)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계
관	항	목					
	인건비	급여	예산	12,802,400	30,497,923	39,058,416	82,358,739
			결산	12,802,400	30,497,923	39,058,416	82,358,739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12,802,400	30,497,923	39,058,416	82,358,739
			결산	12,802,400	30,497,923	39,058,416	82,358,739
			증감	0	0	0	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예산	1,289,534	35,787,206	20,620,194	57,696,934
			결산	1,289,534	35,787,206	20,620,194	57,696,934
			증감	0	0	0	0
		회의비	예산	613,300	0	0	613,300
			결산	613,300	0	0	613,300
			증감	0	0	0	0
			예산	1,902,834	35,787,206	20,620,194	58,310,234

2020년 세출결산서

1

세출결산서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계
관	항	목					
사무비		합계	결산	1,902,834	35,787,206	20,620,194	58,310,234
			증감	0	0	0	0
	운영비	수용비	예산	1,113,451	23,609,640	20,944,231	45,667,322
			결산	1,113,451	23,609,640	20,944,231	45,667,322
			증감	0	0	0	0
		공공요금	예산	0	232,060	656,431	888,491
			결산	0	232,060	656,431	888,491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1,113,451	23,841,700	21,600,662	46,555,813
			결산	1,113,451	23,841,700	21,600,662	46,555,813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15,818,685	90,126,829	81,279,272	187,224,786
			결산	15,818,685	90,126,829	81,279,272	187,224,786
			증감	0	0	0	0
			예산	0	0	0	0

2020년 세출결산서

2

세출결산서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계
관	항	목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결산	0	0	0	0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0	0	0	0
			결산	0	0	0	0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0	0	0	0
			결산	0	0	0	0
			증감	0	0	0	0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예산	0	23,704,870	20,542,175	44,247,045
			결산	0	23,704,870	20,542,175	44,247,045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0	0	0
			결산		0	0	0
			증감	0	0	0	0
			예산	0	23,704,870	20,542,175	44,247,045

2020년 세출결산서

세출결산서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계
관	항	목					
	합계		결산	0	23,704,870	20,542,175	44,247,045
			증감	0	0	0	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예산	21,270	0	517,470	538,740
			결산	21,270	0	517,470	538,740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21,270	0	517,470	538,740
			결산	21,270	0	517,470	538,740
			증감	0	0	0	0
	합계	예산	21,270	0	517,470	538,740	
		결산	21,270	0	517,470	538,740	
		증감	0	0	0	0	
총계			예산	15,839,955	113,831,699	102,338,917	232,010,571
			결산	15,839,955	113,831,699	102,338,917	232,010,571
			증감	0	0	0	0

2021년 사업계획

【직영사업】

1. 사업명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 사업기간: 2021년 03월 ~ 12월
- 사업목적: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습득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을 이민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실시하여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이민자
- 모집인원: 150명

2. 사업명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사업기간: 2021년 03월 ~ 12월
- 사업목적: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습득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이민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실시하여 이민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이민자
- 모집인원: 90명

3. 사업명 : 온라인 마을학교

- 사업기간: 2021년 03월 ~ 12월
- 사업목적
 - 경기북부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쓰기, 한국사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학습능력 향상
 -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
 -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습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고자 함
- 지원대상: 경기북부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 모집인원: 초등학교 40명 / 중학교 40명

【부설사업】

1. 사업명 : 경기도 지정 평생학습관

- 사업기간: 2021년 03월 ~ 12월
- 사업목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의정부 시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평생교육 사업 개발 및 실행, 지역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여 교육 취약 계층을 포함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경기북부 결혼이주여성 및 의정부 취약계층
- 모집인원: 60명

2. 사업명 : 인성함양 프로그램

- 사업기간: 2021년 01월 ~ 12월
- 사업목적: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차별이나 편견 없는 다문화사회 실현
- 지원대상: 경기북부 결혼이주여성
- 모집인원: 15명

3. 사업명 : 평생교육바우처

- 사업기간: 2021년 01월 ~ 12월
- 사업목적: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모집인원: 500명

2021년 사업 예산보고

■ 나눔고용복지재단 사업 예산서

(단위: 원)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관	항	예산액
사업수입	사업수입	-	사무비	인건비	70,000,000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6,000,000		업무추진비	40,00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100,000,000		운영비	31,000,000
차입금	차입금	-	재산조성비	시설비	10,000,000
전입금	전입금	65,000,000	사업비	사업비	20,000,000
이월금	이월금	-	전출금	전출금	-
잡수입	잡수입	200,000	잡지출	잡지출	200,000
세입합계		171,200,000	세출합계		171,200,000

■ 나눔평생교육원 사업 예산서

(단위: 원)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관	항	예산액
사업수입	사업수입	30,000,000	사무비	인건비	13,000,000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16,000,000		업무추진비	2,00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		운영비	-
차입금	차입금	-	재산조성비	시설비	-
전입금	전입금	-	사업비	사업비	1,000,000
이월금	이월금	-	전출금	전출금	30,000,000
잡수입	잡수입	-	잡지출	잡지출	-
세입합계		46,000,000	세출합계		46,000,000

■ 나눔원격평생교육원 사업 예산서

(단위: 원)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관	항	예산액
사업수입	사업수입	55,000,000	사무비	인건비	-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		업무추진비	-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		운영비	-
차입금	차입금	-	재산조성비	시설비	-
전입금	전입금	-	사업비	사업비	20,000,000
이월금	이월금	-	전출금	전출금	35,000,000
잡수입	잡수입	-	잡지출	잡지출	-
세입합계		55,000,000	세출합계		55,000,000

2020년 감사보고서

나눔고용복지재단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의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 집행 내용과 시설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감 사

임상기



감 사

김은하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민락 다함께돌봄센터의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 집행 내용과 시설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감 사

임상기



감 사

김은하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 집행 내용과 시설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감 사

임상기(인)

감 사

김은희(인)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의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 집행 내용과 시설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감 사

임상기



감 사

김은희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부 록



정 관

[제정] 2004년 11월 01일

[개정] 2020년 06월 25일

[개정] 2020년 03월 27일

[개정] 2019년 05월 29일

[개정] 2019년 03월 28일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정관

[제정] 2004년 11월 01일

[개정] 2020년 06월 25일

[개정] 2020년 03월 27일

[개정] 2019년 05월 29일

[개정] 2019년 03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이하 "본법인"이라 한다)라 한다.<2020년 6월 25일 개정>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한국사회의 노동복지발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년 6월 25일 개정>

제3조(소재지)

- ①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 ②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
2.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이주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 시설 설치 또는 해당 시설 위탁 운영 사업 등
3. 고용복지 발전을 위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사업, 시설지원사업과 근로자 관련 사업 및 이와 관련한 공익을 위해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4. 고용복지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및 이주근로자 문제 대책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연대 사업
5. 근로자 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녀 및 가족 돌봄 사업<2019년 5월 29일 신설>
6.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외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위수탁사업<2020년 3월 27일 신설>
7. 위 각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임대사업 및 출판사업 등)을 할 수 있다.
8.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익 공여 무상 원칙)

- ①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 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 (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 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인에 입회하는 자로 한다.

제8조 (회원 가입과 탈퇴)

- ① 전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법인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이 법인을 탈퇴하고 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탈퇴)

이 법인의 사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사원의 상벌)

- ① 이 법인의 사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사원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이사장 포함)
- 2. 이사장 1인 이상 2인 이내 <2020년 3월 28일 개정>
- 3. 서기이사 1인
- 4. 감사 2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선출)

-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와 자격)

- ① **본 법인 임원의 임기는 이사 2년, 감사 2년으로 하고 각 연임할 수 있다.<2020년 6월 25일 개정>**
-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 간에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3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및 이사장)

-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가 수명일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공동대표로 규정 한다.<2020년 3월 28일 개정>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주무 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 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소집한다.<2020년 3월 27일 개정>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재적 임원,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3.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개척 및 통지)

이사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제, 개정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법인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동부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임,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법인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정관 제 개정,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법인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6장 조직

제29조 (사무국)

- ① 본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사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 ③ 사무국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원을 두며,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사무국의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자문 위원단)

-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로 자문 위원단을 둔다.
- ② 자문 위원단은 당해 사업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사장의 위촉을 받아 구성한다.

제31조 (위원회)

- ① 본 법인의 사업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자로서 이사장이 위촉을 받아 구성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재산)

-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원)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총당한다.

- 1. 회원 회비 및 이사회비
- 2. 기부 금품 및 후원 금품
- 3. 수익사업 및 모금사업을 통한 기금
- 4. 기타수익

제34조 (회계 연도)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재산처분)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화,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외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 (세입 세출, 예산, 결산)

- ① 본 법인의 익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 얻은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의 세입 세출 결산을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 (법인의 해산)

- ① 본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등기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본 법인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 (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제 규정)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0조 (기타)

본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본 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는 www.nanumcenter.org로 개설 및 등록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2020년 3월 28일 신설>

부칙

제1조 (정관의 개정 및 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